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4년 10월 14일
-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2항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의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 안 제11조제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차도 구분을 위한 보도 설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호울타리의 우선적 설치에 대해 신설함.
- 검토 결과
  -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에 신설된 조항은 통학로의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근거를 확보하는데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책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이 기대됨.
  - 안 제10조의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를 규정한 내용으로 이곳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속 및 견인 등의 이동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主) 출입문에서의 주차금지 구역의 설정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으로 강화하고자 신설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
-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는 폭이 5M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확인되었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의 보행만 이루어져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됨.
- 한편,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어린이의 사망 당시 장소를 보면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미설치되어 있었음.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3
----------	-----

발의연월일: 2024. 10. .

발 의 자: 전승관, 차인영, 유승용  
이순우, 김지연 의원  
(5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3)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로법시행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0조의2로 한다.

제5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u></li> <li><u>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u></li> <li><u>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u></li> <li><u>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u></li> <li><u>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u></li> <li><u>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u></li> <li><u>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u>8. 어린이 통학로 CCTV(폐쇄</u></li> </ol>



제5조 ~ 제7조 (생략)

제8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신설>

제9조 · 제9조의2 (생략)

<신설>

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 · 제10조의2 (현행 제9조 및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신 설>

제10조 · 제11조 (생 략)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